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개요

1.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의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2.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교부 우선 순위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았지 더 오래된 자

4. 교부 제한

- 전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는 교부 가능
-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 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 당해년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가능

기타 교부품목 지원안내

- 지정된 교부품목을 교부한 후 10월말 기준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잔액발생이 예상될 경우 시·군·구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내부방침을 정하여 기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추진
- 기타품목에 사용되는 예산은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원예산 총액의 20% 범위 이내로 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 장애인보조기구의 가격은 당해 연도의 지정 교부품목 중 최고가격을 넘지 않도록 함
- 지정된 품목을 우선적으로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타 품목의 교부는 지정된 품목의 추가적인 수요가 존재하지 않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가능
- 교부한 기타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명, 금액, 계약업체를 최종실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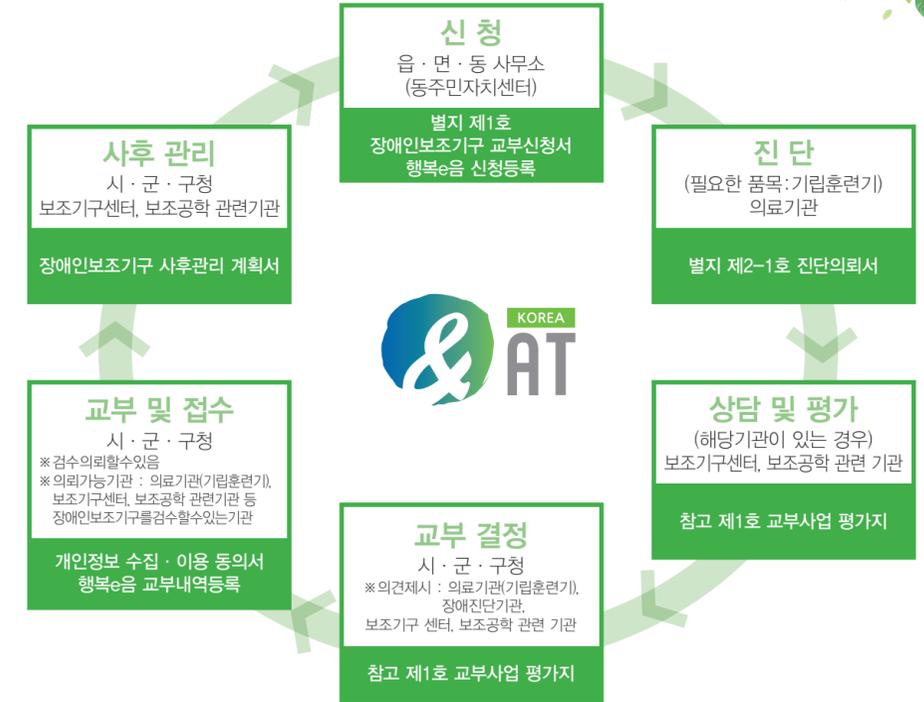
장애유형별 지원 품목 및 지원 금액

장애유형	구분	품목코드	제품 외형	설명	대상	지원 기준	내구 연한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 (1~2급) 2품목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엉덩이 부위에 과도하게 가해지는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 피부 보호 및 욕창을 예방해주는 제품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장시간 앉아있는 분	350천 원/인	2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04 33 06		장시간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 피부 보호 및 욕창을 예방해주는 제품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장시간 누워있는 분		
지체, 뇌병변 장애 (1~2급) 8품목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15 09 03		음식 및 음료가 제공되는 보조기구. 가열 접시, 진공 보온병 등이 포함	손의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 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분	50천 원/인	1년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음식을 잘라 먹을 때 사용하거나, 음식이 용기에서 사람의 입으로 이동될 때 사용되는 도구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예를 들어 음료 섭취를 위해 손의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제작된 코와 밀착되는 부분을 제거한 컵			
	접시 및 그릇	15 09 18		접시, 뚜껑 또는 손잡이 있는 그릇 및 쟁반 등이 포함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동안 신체를 안전하게 지지해주는 장치로 바뀌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	600천 원/인	3년
	음식 보호대	15 09 21		접시 및 그릇의 모서리 부분 끼워 음식을 뜯 때 접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굴곡 있는 표면			
	목욕 의자	09 33 03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동안 신체를 안전하게 지지해주는 장치로 바뀌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			
기립훈련기	04 48 08		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고정식 장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12 06		보행시 사용자를 지지하는 장치로 양 팔이나 상체로 조종이 가능함	균형 문제 등으로 혼자 걷기가 어려운 분	200천 원/인	5년	
시각장애 5품목	음성유도장치	12 39 09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이나 메시지로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장치. 송신부와 수신 리모컨으로 구성됨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20천 원/인	2년
	음성시계	22 27 12		시간을 측정, 표시하거나 말해주는 장치. 휴대용 및 비휴대용 장치 및 알람 기능이 있거나 없는 장치 등이 포함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30 03		문서 정보를 음성 형태로 표현하고 저장하는 매체			
	영상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	22 03 18		비디오카메라로 찍은 물체의 확대 영상을 출력하는 장치. 카메라, 제어장치, 비디오 모니터 및 디지털 비디오 등이 포함	사물 및 인쇄물의 배율, 색상, 밝기 등을 조절하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800천 원/인	
	녹음 및 재생장치	22 18 03		음을 녹음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로 모든 테이프 레코더, 음색 생성기 및 소거기, MD, CD 플레이어 녹음기기 DAISY 플레이어 같은 디지털 음 재생 및 레코딩 기기 등이 포함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500천 원/인	3년
청각장애 3품목	진동시계	22 27 12		시간을 측정, 표시하거나 말해주는 장치. 휴대용 및 비휴대용 장치 및 알람 기능이 있거나 없는 장치 등이 포함	진동(촉각)으로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30천 원/인	
	헤드폰 (청취증폭기)	22 06 24		텔레비전, 라디오 및 스테레오의 음량을 증가하는 장치나 통신 확성기와 함께 사용되는 것 등이 포함	일반적인 소리는 들을 수 없어 들을 수 있는 강화된 형태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	120천 원/인	2년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송신기가 있는 곳에서 빛이나 다른 시각 신호로 신호를 표시해주는 기기. 문 표시기, 문 신호 표시기 및 문 경고장치 등이 포함	빛(시각) 또는 진동(촉각)을 통한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150천 원/인	

14년도 교부사업 주요변경 내용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신청 및 주요 과정



- 시·군·구청장은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의뢰서를 교부
-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자에게 의뢰서를 제출할 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함
-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를 의뢰받은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제조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교부품목을 검수해야 하며 검수는 아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의뢰가능 기관 : 의료기관, 보조기구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검수할수 있는 기관

정부 부처별 보조기구 지원 사업

사업명(소관부처)	신청대상자	지급품목	신청기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이면서 장애인 시각, 청각장애는 등급무관,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 (1~2등급) (+근육병증 등 포함)	▶ 18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체, 뇌병변, 심장-욕창 예방용 방석, 외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지체, 뇌병변-차체보조용구(의사의 진단 필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시각-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 확대기), 인쇄물을성변환출력기 청각-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 구역 체계에 따라 읍 또는 면사무소)에 문의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 보장과)	장애인 (시각, 청각, 지체, 언어장애 등)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면서 장애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 구역 체계에 따라 읍 또는 면사무소)에 문의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건강보험급여: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차상위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이면서 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기타재가급여: 요양보험제도과)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 장기 요양등급 3등급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입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 방지매트, 미끄럼 방지액, 미끄럼 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 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급여비용 본인 부담률: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7.5%,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정보통신 보조기구 지급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문화과)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보호아동, 국가유공자등	▶ 78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점자정보 단말기, 점자 디스플레이, 바코드 리더기, 데이지 플레이어, 광학문자판독기,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점자 라벨기, 모바일 제어기기,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 모니터, 모니터이동보조기, 독서보조기,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 언어 훈련 소프트웨어, 글도음향기, 무선신호기, 음성증폭기 등 본인 부담금: 일반대상자 2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의 50% 추가지원 	한국정보화진흥원 02-1588-2670
산재보험급여 재활보조기구 지급사업 (고용노동부 산재)	산재보험 가입자 산업재해 장애인	▶ 19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상단의 표 내용 참고) 및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급여품목 산재보험 급여품목: 의지/보조기/욕창예방용구/소변집뇨기/이동기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활동형 휠체어, 이동식 리프트) 등 전액지원 	1588-0075 <상당 및 서류> 근로복지공단 <지급> 직영병원 또는 재활공학 연구소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거주지내 의료기관)
국가유공자 보철구지급사업 (보훈처 보훈의료과)	전산군경, 공상군경 4,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 상이자로서 신체장애인	▶ 269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지의지-어깨관절, 팔, 손의지 등 하지의지-엉덩이관절, 넓적다리, 무릎관절의지 등 기타-전자지수, 목발, 인공후두, 독서확대기, 등 전액지원 	1577-0606 <상담> 보훈상담센터 <처방전>중앙(지방)보훈병원 (체직및수납)보훈병원 보정구센터 <지급청구>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할 시, 군, 구청 사회복지과 <접수>보훈병원 보정구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등록장애인 중 근로자 직업훈련생 또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	▶ 16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단체의 장)가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고용 해제 시 기기는 공단에 반납 품목: ①정보접근-점자프린터, 확대독서기 등 ②작업기구-테이블, 특수 작업의자 등 ③의사소통-신호장치, 글도전화기 등 ④사무보조-음성메모기, 수화기출력 등 상용보조공학기기 시험사용지원 및 무상임대·지원 맞춤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 무상임대는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무상지원은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사업

1. 개요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사업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위탁 사업입니다.

기본방향 전국적인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개인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제공,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장애인보조기구 정보제공 체계 구축

중점과제 보조기구 서비스 실시, 보조기구 영역별 및 장애 영역별 서비스 매뉴얼 발간, 광역보조기구센터 지원, 보조기구 공격적 연계사업 지원,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홍보물 발간 및 보조기구 관련 행사 지원, 전문인력 교육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

2.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사업 전국망

센터명	수행기관	주소	홈페이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구센터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142-070)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1층	http://knat.go.kr
경기도 보조기구센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북부센터> (480-836) 경기도 의정부 충의로 73 밀레니엄프라자 302호 <남부센터> (441-44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별관3층	http://atrac.or.kr/
경상남도 보조기구센터	경상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641-82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97번길 85	http://assist.or.kr/
광주광역시 보조기구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500-210)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590 호남권역재활병원 L층	http://rtc.chosun.ac.kr/
대구광역시 보조기구센터	대구대학교	(705-714)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50길 33 대구대학교 1층	http://datc.daegu.ac.kr/
대전광역시 보조기구센터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301-721)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66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지하1층	http://www.yeswecan.or.kr/
부산광역시 보조기구센터	부산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611-820)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http://bratc.or.kr/
인천광역시 보조기구센터	재단법인 노틀담 수녀회 노틀담복지관	(407-05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35번길 12-37	http://ntd.or.kr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청주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	(361-83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 충북재활의원 3층	http://cbat.or.kr/



2014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사업



www.knat.go.kr **보** **조** **기** **구**
1670-5529
 장애인보조기구 콜센터



스마트기에서 보기